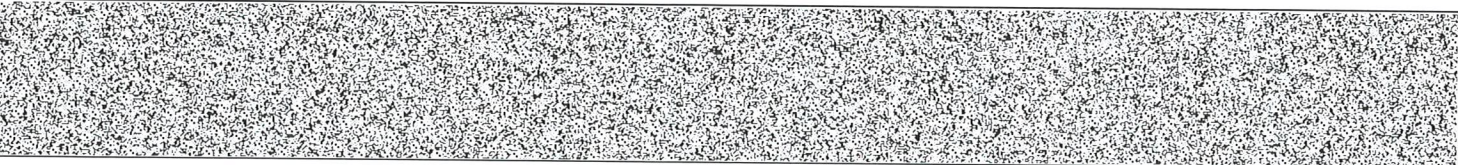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32599		
등록번호	134511-0325991		
상 호	주식회사 더에르코	.	.
	주식회사 에르모어	2019.01.17 변경	2019.01.21 등기
본 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33번길 26(하갈동)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32(상하동)	2018.11.16 변경	2018.11.20 등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17, 가동(상하동, 세종창고)	2019.12.26 변경	2019.12.27 등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08, 3층(삼가동, 라파엘 메디빌)	2021.11.08 변경	2021.11.09 등기
광고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당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rmor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2025.03.31 변경	2025.04.11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금 500 원	2022.04.25 변경	2022.05.02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 주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	
보통주식	10,000 주	.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2022.04.25 변경	
보통주식	100,000 주	2022.05.02 등기	
목		적	
1. 유아용품 도소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화장품 도소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032599			
1. 패션 의류 및 잡화 무역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가공식품 도소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소분업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0.01.13	삭제	2020.01.15	등기>
1. OEM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의류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생활용품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정수필터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화장품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유아용품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식품 및 가공식품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잡화 제조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및 무역업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0.01.13	추가	2020.01.15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사내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 102동 903호(구갈동, 기흥역터삼)~~

2019 년 01 월 17 일 주소기입 2019 년 01 월 21 일 등기

2020 년 06 월 20 일 중임 2020 년 06 월 23 일 등기

~~사내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20, 504동 2001호(구갈동, 강남마을코오롱하늘채)~~

2022 년 02 월 03 일 주소변경 2022 년 05 월 02 일 등기

2023 년 06 월 20 일 중임 2023 년 06 월 23 일 등기

사내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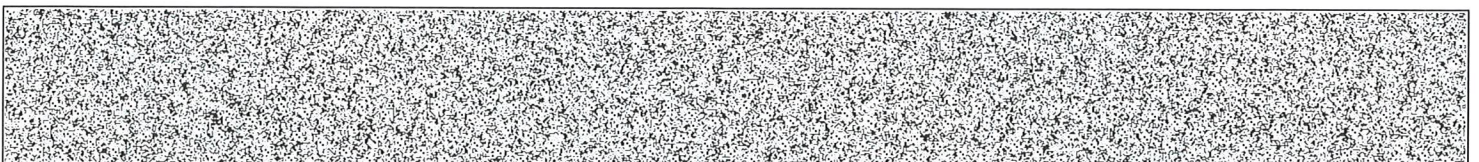
2025 년 02 월 13 일 주소삭제 2025 년 02 월 14 일 등기

~~사내이사 이승준 890208-1182513~~

2019 년 01 월 17 일 사임 2019 년 01 월 21 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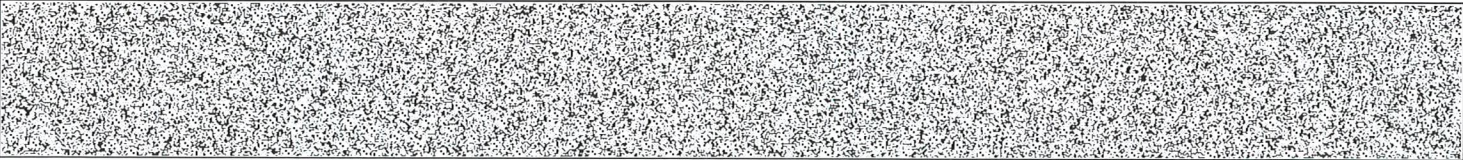
~~감사 이종준 870407-1182516~~

2020 년 03 월 31 일 임기만료 2020 년 06 월 23 일 등기



등기번호	032599
대표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43, 404동 1104호(구갈동, 강남마을자연엔) 대표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 102동 903호(구갈동, 기흥역더샵)	
2018 년 11 월 30 일 주소변경	2019 년 01 월 21 일 등기
2019 년 01 월 17 일 퇴임	2019 년 01 월 21 일 등기
사내이사 최진희 791230-2792913	
2025 년 02 월 13 일 취임	2025 년 02 월 14 일 등기
사내이사 박보선 690101-1473713	
2025 년 02 월 13 일 취임	2025 년 02 월 14 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20, 504동 2001호(구갈동, 강남마을코오롱하늘채)	
2025 년 02 월 13 일 취임	2025 년 02 월 14 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허선희 880929-20798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 101동 4603호 (구갈동, 기흥역 더샵)	
2025 년 03 월 05 일 주소변경	2025 년 04 월 24 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최진희 791230-27929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호수로359번길 8, 1층 (상현동)	
2025 년 02 월 13 일 취임	2025 년 02 월 14 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회 전환사채	
< 2023 년 12 월 21 일 발행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 2024 년 02 월 13 일 전부상환	2024 년 02 월 22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50,000,000원	
< 2023 년 12 월 21 일 발행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 2024 년 02 월 13 일 전부상환	2024 년 02 월 22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오천만원권 1매	
< 2023 년 12 월 21 일 발행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 2024 년 02 월 13 일 전부상환	2024 년 02 월 22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금50,000,000원	
< 2023 년 12 월 21 일 발행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 2024 년 02 월 13 일 전부상환	2024 년 02 월 22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사채권면 금액의 100%	
나) 전환가격: 주당 오만원(50,000원)	
다) 전환가격 변경(REFIXING):기업이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또는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 포함)에는 전환가격(본조 규정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에는 조정후 전환가격)과 ‘기업 공개시 공모가격(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을 의미함)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정한다.

라)전환의 주식수 : 시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 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시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 할수 없다.

마)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바)전환청구기간 : 시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사)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시 “투자자”는 서면으로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아)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단, “투자자”가 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가자급 이 자에 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자)전환가격 조정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 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1주당 신발행가} \times \text{신발행 주식수}) \\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end{aligned}$$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투자자”간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① “회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과 동일하였더라면 “투자자”가 가질수 있는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시 회사의 1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회사 1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동금액이 액면 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②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시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시채로서 받을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시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 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가.목의 산식중 “시가”는 당해 발 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발행회사”가 상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재무관 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3.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유,무상증자의 승인 :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회사”가 유,무상증자를 실시하

등기번호

032599

코자 할때에는 “투자자”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본건 사채에 관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본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회사”는 당해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항 제4호에서 정하는 본건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사채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하고, 증자사실이 기록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라.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 또는 “투자자”이 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단, 동일주권 발행전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시본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 2023년 12월 21일 발행 2024년 01월 02일 등기 >

가) 전환비율: 사채권면 금액의 100%

나) 전환가격: 주당 오만원(50,000원)

다) 전환가격 변경(REFIXING): 기업이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또는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 포함)에는 전환가격(본조 규정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에는 조정후 전환가격)과 ‘기업 공개시 공모가격(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을 의미함)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정한다.

라)전환의 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 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마)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시 “투자자”는 서면으로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바)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단, “투자자”가 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가지급 이자에 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사)전환가격 조정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1\text{주당 신발행가} \times \text{신발행 주식수}) \\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end{aligned}$$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투자자” 간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① “회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등기번호

032599

~~위한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과 동일하였다면 “투자자”가 가질수 있는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시 회사의 1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회사 1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동금액이 액면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②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사채로서 받을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가.목의 산식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발행회사”가 상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3.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유,무상증자의 승인 :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회사”가 유,무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투자자”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본건 사채에 관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본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회사”는 당해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항 제4호에서 정하는 본건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사채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하고, 증자사실이 기록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라.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 또는 “투자자”이 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단, 통일주권 발행전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사본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이에 대신할수 있다.~~

~~< 2024 년 01 월 02 일 직권경정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 2024 년 02 월 13 일 전부상환 2024 년 02 월 22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23 년 12 월 21 일 발행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 2024 년 02 월 13 일 전부상환 2024 년 02 월 22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의 익일(2023년 12월 22일)로부터 만기일(2026년 12월 19일)의 전일까지~~

~~< 2023 년 12 월 21 일 발행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사채발행일의 익일(2023년 12월 22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2026년 12월 19일)~~

~~< 2024 년 01 월 02 일 직권경정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

~~< 2024 년 02 월 13 일 전부상환 2024 년 02 월 22 일 등기 >~~

등기번호	032599
------	--------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본 회사는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단,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5년 03월 31일 설정 2025년 04월 11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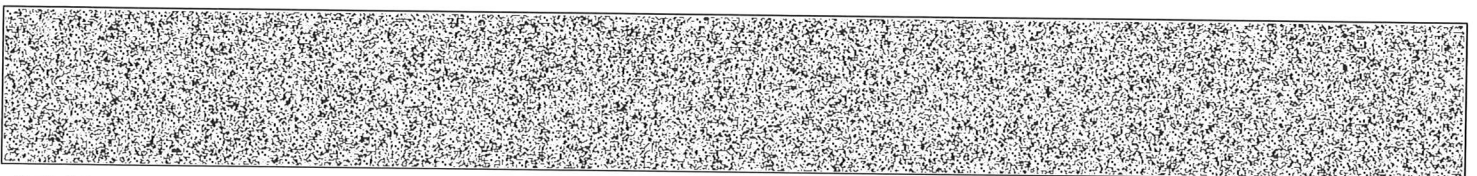
회사성립연월일

2017년 06월 2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7년 06월 20일 등기



발행번호 1150405038501030226100522009291502T3E0N1R1E5T4N311C

발급확인번호 5990-AAYP-CYSJ

발행일 2025/06/23

등기번호	032599
------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5년 0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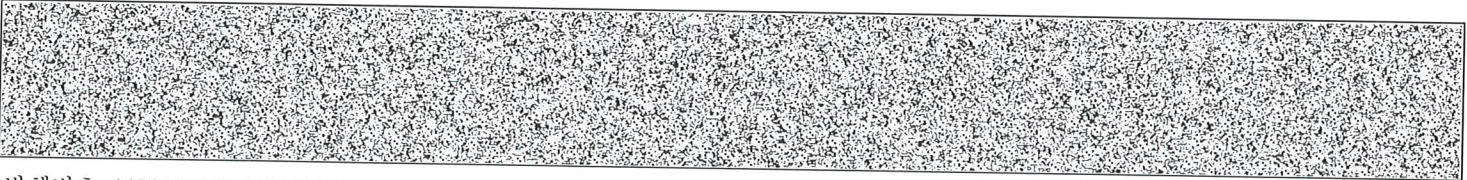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전산운영책임관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50405038501030226100522009291502T3E0N1R1E5T4N3I1C

발급확인번호 5990-AAYP-CYSJ

발행일 2025/06/23